

# 2015

# 지방세 길라잡이

- 본 길라잡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目 次

I. 지방세의 개관 .....	1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13
III.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	41
IV. 유용한 세금정보 .....	69
부록 .....	105

# I. 지방세의 개관



## 조세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가 무엇인지 실정법상 그 정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독일의 경우 조세기본법 제3조에서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징수 하는 금전” 정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세외수입’과 다릅니다. 세외수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역시 조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세와 세외수입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구 분	조 세	세외수입
재원의 성격	자주재원	자주재원
체납처분	자력집행	자력집행
응의성 여부	대가 없이 강제징수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
징수수단	다양	제한적
신규수입 발굴	제한적(조세법률주의)	자율적
구제수단	정형화	다양성

자료 : 차규현, 自動車關聯 租稅의 改編方案 研究(2014, 박사학위 논문)

세외수입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상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 2013. 3. 25. 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세외수입과 채권의 차이점은 자력집행 여부에 있습니다. 즉 세외수입은 체납될 경우 과세관청의 자력집행이 가능하나, 채권은 과세관청 스스로 자력집행 할 수 없고 법원을 통한 타력집행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 조세의 분류

조세는 수입이 국가로 귀속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지며,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 우리나라 조세의 분류



자료 : 이성식, 조세법총론(2010), 일부 수정

# I. 지방세의 개관



## 납세의 근거

-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관련 법도 헌법을 정점으로 헌법 - 법률 - 명령 - 자치법규(지방세)라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헌법 아래 다양한 조세관련 법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조세관련 법규

구 분		법 규
국 세	내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li> <li>*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1세목 1세법주의」 이기 때문에 세목 하나 당 세법 하나가 존재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는 세목이 두 개 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에서 관련 내용 규정</li> </ul>
	관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법</li> </ul>
지 방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li> </ul>
국 세 · 지 방 세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제38조, 제59조, 제117조)</li> </ul>

- 국세와 지방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통칙」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과세관청 내부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통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규범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에서는 기본통달(基本通達)이라고 부릅니다.



## 용어의 정의

###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 ■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 ■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 ■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 등을 말합니다.

### ■ 세율

세(稅)를 부담하는 비율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때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말합니

# I. 지방세의 개관

다.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sup>1)</sup>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 ■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 ■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 ■ 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 ■ 납세고지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

---

1) 일본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방식은 ① 보통징수(日本 地方税法 제1조 제7호), ② 신고납부(동조 제8호), ③ 특별징수(동조 제9호), ④ 증지징수(동조 제13호)가 있습니다. 증지징수가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합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 동안(본세의 3%, 한 번만 부과됨)만 부과되며, 증가산금은 본세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가산금이 표기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부과됩니다.

### ■ 체납처분비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

# I. 지방세의 개관

료 포함)을 말합니다.

## ■ 체납자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 체납액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합니다.



## 월별 지방세·국세 신고 및 납기 안내

월별	지 방 세		국 세
	도 세(광역시세)	시·군세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1.31. 한)</li> <li>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면허세(면허분) (1.16~1.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1.25. 한)</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분할납부(3.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 한)</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30.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4.25. 한)</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5.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 확정신고(5.31. 한)</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소유분) 납기(6.16~6.30)</li> <li>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분할납부(6.30.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6.30. 한)</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세(재산분) 납기 (7.1~7.31)</li> <li>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7.16~7.31)</li> <li>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7.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분] 납기(7.16~7.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7.25. 한)</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세(균등분) 납기 (8.16~8.31)</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납기(9.16~9.30)</li> <li>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 납부/분할납부(9.30.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9.30. 한)</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0.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25. 한)</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 한)</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세(소유분) 납기(12.16~12.31)</li> <li>자동차세(소유분) 분할납부(12.31. 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12.31. 한)</li> <li>종합부동산세 납기(12.1~12.15)</li> </ul>

# I. 지방세의 개관

월별	지 방 세		국 세
	도 세(광역시세)	시·군세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소득세(특별징수)(10.한)</li> <li>주민세(종업원분)(10.한)</li> <li>레저세(10.한)</li> <li>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li> <li>담배소비세(다음 달 말일 한)</li> <li>자동차세(주행분)(다음 달 말일 한)</li> <li>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와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에너지환경세(다음 달 말일 한)</li> <li>원천징수 소득세 등(다음 달 10.한)</li> </ul>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li> <li>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li> <li>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li> <li>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면허세(각종 등가등록 및 인·허가를 받을 때)</li> <li>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li> <li>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신고·과소신고분 수시부과</li> <li>기타 과세누락분 수시부과</li> </ul>

주1)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주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충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 지방세의 개관



## 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과 세 대 상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 : 2.8%,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1%('14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기준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38
	양도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38, 1천분의0~1천분의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2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 민 세	균등분	개인·법인	개인(1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조례로 정함), 법인(5~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1㎡당 250원
	종업원분	급여액 (50인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 동 차 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년 1cc당 80~200원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레 저 세	승매(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 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
재 산 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 : 0.2, 0.3, 0.5% 별도 : 0.2, 0.3, 0.4% 분리 : 0.2%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만8천원 ~ 6만7천5백원



## Ⅱ. 지방세 세목별 해설

## Ⅱ. 지방세 세목별 해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취득세

####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 또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 초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부동산 등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 지분 비율만큼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나. 과세대상

##### ①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4호).

### ②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7호). 다만, 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습니다.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점이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릅니다.

### ③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8호).

### ④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9호).

### ⑤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일반적으로 선박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sup>2)</sup>

### ⑥ 임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 ⑦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 ⑧ 어업권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권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2) 전동훈, 2011, 지방세실무해설, 서울 : 영화조세통람, p.788.

### ⑨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 ⑩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 ⑪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 ⑫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 ⑬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요트회원권은 2014년도부터 새롭게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다. 과세표준

-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年賦)<sup>3)</sup>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 그러나 다음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에

3)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참조), 부동산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3170 판결 참조).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라. 세율

○ 취득세의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그리고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지방세법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과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을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이는 2013. 8. 28. 이후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세율이 3배 또는 5배 등 중과세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취득세의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의 세율〉

구 분		취득세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원시취득	2.80%
	공유·합유·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 이하 1.00%
		6억원 ~ 9억원 2.00%
		9억원 초과 3.00%
선 박	상속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구 분		취득세 세율
	수입·주문 건조취득	2.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00%
차 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00%
	비영업용 승용차 외	5.00%, 경자동차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	2.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00%
항공기	등록이 불필요한 항공기	2.00%
	그 밖의 항공기	2.02%
		2.01%(5,700kg이상)
광업·어업권		2.00%
입 목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2.00%

자료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지방세(2014)

## 마. 취득의 시기

- 취득의 시기는 곧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이므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sup>4)</sup> ① 화해조사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sup>5)</sup>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사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알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 연장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4)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비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 바. 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사. 가산세

- 지방세법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본래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다음의 가산세가 더해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가 산 세
무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li> <li>└ 사가부정 무신고 : 산출세액의 40%</li> </ul>
과소신고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세액의 10%</li> <li>└ 사가부정 과소신고 : 사가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li> </ul>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 $\frac{3}{10,000}$
무신고 매각 가산세	산출세액의 80% ※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자료 : 지방세법 제21조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행자부 세정과-5674, 2006.11.16.).

- 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아.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제1항).

### 자. 계산사례

#### (1) 취득세

##### ○ 예문

- ▶ 甲은 2014년 7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은 300,000,000원이고,  
甲은 과세관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8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甲이 납부할 취득세는?

##### ○ 계산

- ▶ 과세표준(A) : 300,000,000원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비교하여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 ▶ 세 율(B) : 1%
- ▶ 산출세액(A × B) : **3,000,000원**

##### ○ 납부세액

- ▶ 따라서 甲은 3,000,000원의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2) 가산세

##### ○ 예문

- ▶ 甲이 신고납부 해야 할 취득세는 3,00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1,500,000원만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1,500,000원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나머지 1,500,000원 중 1,000,000원은 사기·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되었고, 500,000원은 단순 과소신고 되었음).  
甲은 부담하여야 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 ○ 계산

- ▶ 사기·부정 과소신고분 세액의 40%(A) : 400,000원
-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B) : 50,000원
- ▶ 가산세(A + B) : **450,000원**

##### ○ 납부 가산세

- ▶ 따라서 甲은 450,000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세목인 '부동산취득세'가 있습니다 (日本 地方稅法 제73조 이하).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토지나 가옥을 취득한 자
    - ※ 토지나 가옥을 유상·무상 혹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매매, 교환,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에 의해 취득한 자(개인, 법인 불문)<sup>6)</sup>
  - 과세대상 : 토지\* 및 가옥\*\*
    - \* 밭, 논, 택지, 염전, 광천지, 지소, 산림, 목장, 원야 기타의 토지
    - \*\*주택, 점포, 공장, 창고 기타의 건물
  - 과세표준 :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부동산의 가격\*
    - \* 총무대신이 정한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결정된 가격(평가액)으로서, 신축·증축가옥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고정자산 과세대상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말하므로 부동산의 구입가격이나 건축공사비와는 다르고, 또한 토지나 가옥을 증여받거나 교환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적용됨.<sup>7)</sup>
  - 표준세율 : 4%
  - 납세방법 : 보통징수
    - ※ 우리나라의 취득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일본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징수하는 보통징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등록면허세(등록분)

6) 東京都主税局, 2014, *ガイドブック都税2014*, 東京都主税局, p.33.

7) 東京都主税局, 위의 책, p.33.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가. 납세의무자

-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이 때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 취득이 수반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취득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등록면허세에 있어서도 동조 동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 다. 세율

-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현행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
	소유권의 이전(상속, 무상, 유상)	0.8%~2%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0.2%
	기타	6,000원
선 박	소유권의 보존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 타	15,000원
건설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 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 타	9,000원

구 분		현행세율
법인등기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40,200원
상호 등 등기	기 타	40,200원
	상호설정 등	78,700원
	지배인 선임	12,000원
광업권	선박관리인	12,000원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변경(감구)	15,000원
	이전(상속)	26,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어업권	기타	12,000원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지분이전(상속)	3,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저작권 등	기 타	9,000원
	상속	6,000원
	상속 외	40,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특허권 등	기 타	3,0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상표·서비스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 타		12,000원

자료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지방세(2014)

## 라. 신고 및 납부

-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sup>8)</sup>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 마. 특별징수제도

8)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 등 지방세법에서 그 납세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5조).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도 해당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특별징수 의무자가 특별징수 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 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31조 제3항).
- 또한,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31조 제4항).

### 2. 등록면허세(면허분)

#### 가. 납세의무자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가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2호). 이 때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 나. 과세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종별(1종~5종)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다. 세율

○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율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자료 :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

## 라. 신고납부 등

구 분	방 법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받는 자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보통징수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자료 : 지방세법 제35조

 일본에도 '등록면허세'라는 세목이 있는데, 우리와 달리 국세입니다.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등기 등\*을 받는 자  
\* 등기, 등록, 특허, 면허,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및 기술인증
- 과세표준 및 세율 : 日本 登録免許稅法 (별표 1)

## 재산세

○ 이제 토지 등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 납세의무자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예외적인 납세의무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p>재산세 과세기준일<sup>9)</sup>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li> <li>•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li> <li>•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봄)</li> </ul>
예외적 납세의무자	<p>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증재산으로서 중증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li> <li>•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sup>10)</sup></li>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 계약자</li> <li>•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li> </ul>

자료 : 지방세법 제107조

### 나. 과세대상

9) 매년 6. 1.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즉, 6. 1. 24시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이 당해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기본통칙 106-1).

10)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 5종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5조).
-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유는 토지·건축물을 일괄평가하기 때문입니다.<sup>11)</sup>

## 다.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의 과세표준>

- ◆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별도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

※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은 전국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합산합니다. 분리과세대상토지는 해당 토지별로 건건이 과세합니다.

## 라. 세율

- 과세대상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

### (1)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11)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③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시(읍면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3)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마. 징수방법 및 납세지

-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 또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납세지
토지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	주택의 소재지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항공기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지)

### 바. 납기

-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frac{1}{2}$ 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frac{1}{2}$ 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사. 세부담의 상한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함)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며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05에서 100분의 30을 상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2조).

### 아. 물납 및 분납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및 제118조).
- 물납 및 분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IV. 유용한 세금정보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산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

### 자. 계산사례

#### ○ 예문

- ▶ 甲은 2014년 2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2014년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300,000,000원입니다.  
甲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에도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014년도에 甲이 납부할 재산세는?

#### ○ 계산

- ▶ 과세표준(A) : 180,000,000원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300,000,000원) ×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
- ▶ 세 율(B)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산출세액 : **270,000원**

○ 납부세액

▶ 재산세액에는 도시지역분<sup>12)</sup>이 가산됩니다.

도시지역분 : **252,000원**(180,000,000원 × 0.14%)

따라서 甲은 **522,000원**<sup>13)</sup>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세 본세에 붙는 여러 부가세(surtax)가 있어 甲이 부담해야 할 총세액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 부가세에는 ①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와 ②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 부가세(surtax)의 계산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52,700원

※ 67,000,000원(가정한 과세표준<sup>14)</sup>)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지방교육세 : 54,000원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을 제외한 270,000원)의 20% 과세

○ 따라서 甲은 재산세(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와 부가세(surtax)를 합하여 2014년도에 총 628,7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본에도 지방세로서 우리의 재산세와 비슷한 '고정자산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고정자산\*의 소유자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을 총칭

• 부과기일 : 매년 1월 1일

※ 부과기일은 우리나라의 과세기준일 개념과 같은 것입니다.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되며, 2014년도부터 부가세(surtax) 방식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하에서 납세의무자 등 지방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과거에는 '도시계획세'라고 불렀고, 그 후에 '재산세 과세특례'라고 불렀으며, 현재 '도시지역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3) 재산세 '납세고지서'상 '재산세'란에 522,000원이 표기됩니다.

14) 아파트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과세표준은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1.자로 발행하는 건물시가표준액(구 소방공동시설세인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므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제외됨)상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액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가.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6조 제1항).

### 나. 과세대상

-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 과세표준

-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소득세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세율과 각종의 세액공제·감면은 소득세의  $\frac{1}{10}$  수준을 적용하나, 법인의 경우 세율은 법인세의  $\frac{1}{10}$  수준을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은 2017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라. 세율

#### 〈개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 5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 5] × 근속연수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 형태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양 ※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 적용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li> <li>•내국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천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li> </ul> <p style="color: blue; margin-top: 5px;">※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 적용</p>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100분의 10

#### 마. 확정신고와 납부

구 분	신고와 납부
개인지방소득 (종합, 퇴직, 양도소득)	해당 소득세의 신고기한(다음년도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바. 기타

- 지방소득세도 신고주의 세목이므로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소유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가.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이륜차) 되어 있는 자동차를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연세액의  $\frac{1}{2}$ 은 6월에(납기 : 6.16~6.30), 나머지는 12월에(납기 : 12.16~12.31) 과세됩니다.

### 나. 과세대상

- 과세대상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24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0조).

###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데,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다음과 같이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료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승합자동차 등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 참고사항

- 차량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 5% ~ 50%까지 감면되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동법 제128 제3항).

## 마. 계산사례

### ○ 예문

- ▶ 甲은 2013년 12월 31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습니다. 그 자동차의 배기량이 1,599cc인 경우 甲이 2014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 연세액은?

### ○ 계산

- ▶ 과세표준(A) : 1,599cc
- ▶ 세 율(B) : 140원(cc당)
- ▶ 산출세액(A×B) : **223,860원(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에 추가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 및 제151조).

지방교육세 : 67,150원 (223,860원 × 30%)

- 따라서 甲은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2014년도에 **총 291,010원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자동차에 대하여 i) 자동차취득세, ii) 자동차중량세, iii) 자동차세, iv) 경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이 중 국세인 자동차중량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일본 자동차세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日本 地方稅法 제145조 등)
- 과세대상 : 자동차
  - \*경자동차, 이륜의 소형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특수자동차 등 경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과 대형특수자동차는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배기량(승용자동차의 경우) 및 cc당 세액 (日本 地方稅法 제147조)
- 부과기일 : 매년 4월 1일(日本 地方稅法 제148조)
- ※ 배기량 660cc 이하의 자동차는 경자동차세가, 660cc 초과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주민세

-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분’,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이하에서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 1. 균등분 주민세

- 균등분 주민세는 다시 i) 개인 균등분, ii) 개인 사업자 균등분, iii) 법인 균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개인 균등분

##### 가.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제외)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입니다.

#### 개인 사업자 균등분

##### 가. 납세의무자

-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함)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 나. 서울 : 5만원

### 법인 균등분

#### 가.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1항).

#### 나. 서울

구 분	세 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지방세법 제85조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함)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자료 :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방법 등
  - ▶ 징수방법 : 보통징수
  -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 납기 :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II. 지방세 세목별 해설

### 2. 재산분 주민세

#### 가. 납세의무자

-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나,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 나.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입니다(지방세법 제80조).

#### 다.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m<sup>2</sup>당 250원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 라. 징수방법 등

- 징수방법 : 신고납부
- 납 기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면 세 점 : 사업소의 연면적 330m<sup>2</sup> 이하

### 3. 종업원분 주민세

#### 가.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지방세법 제75조 제3항).

#### 나.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2).

#### 다. 세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3).

## 라. 징수방법 등

- 징수방법 : 신고납부
- 납 기 : 다음 달 10일까지
- 면 세 점 :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Ⅲ.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 Ⅲ.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 본 장에서는 지방세의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

- 지방세도 일반과세보다 더 무겁게 과세되는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 세목별·유형별로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기초 (②)	세목별 분류(①)					중과지역별 분류(③)			비 고
	취득세	등록세 <sup>1)</sup>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대도시 내	특·광역시 특정지역	지역구분 없음	
사치성 재산	○		○					√	지법 13 ⑤/ 111 ①
법인분점용 부 동 산	○					√			지법 13 ①
법인 등 기		○				√			지법 28 ②
법인부동산 등 기		○				√			지법 13 ②
공 장 신 · 증 설	○	○	○			√			지법 13 ①/ 13 ②/ 111 ②
공 장 용 건 축 물			○				√		지법 111 ①
특 정 건 축 물					○			√	지법 146 ②
오 염 물 질 배 출 사업 소				○				√	지법 81 ③

주 : 1) 2011년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나, 설명의 편의상 등록세로 표현  
 자료 : 임재근, 지방세법상 중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006), 일부수정

# III.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제도

○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상의 비과세·감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1. 지방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해당 조항
취득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 ①
		기부채납 조건부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100)	9 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취득세(100)	9 ③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9 ④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취득세(100)	9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9 ⑥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100)	26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등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	등록면허세(100)	26 ② 4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수출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1
		국군, 전투경찰 등에 납품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2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3
		외항선 등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4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5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6
		국가원수가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담배 등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②
주민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100)	77 ① 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세(100)	77 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균등분 주민세(100)	77 ②
지방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지방소득세(100)	90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해당 조항
		비과세되는 소득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세(100)	109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유료사용은 부과)	재산세(100)	109 ②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재산세(100)	109 ③ 1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재산세(100)	109 ③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	재산세(100)	109 ③ 3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재산세(100)	109 ③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재산세(100)	109 ③ 5
자동차세	비과세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 ○ 1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 ○ 2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100)	126 ○ 3
지역자원 시설세	비과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145 ① 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100)	145 ① 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100)	145 ②

##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감면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농어업을 위한 지원	지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6 ①	
		농업용 온실 등 취득	취득세(50)	6 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도로점용 등 면허	등록면허세(100)	6 ③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직접경작 목적 농지 등 취득	취득세(50)	6 ④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 자동차경운기 등 농업기계	취득세(100)	7 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득세(100)·재산세(100)	7 ②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등	취득세(100)	8 ①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등	취득세(100)	8 ②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	취득세(100)	8 ③	
		임업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 이내) 취득	취득세(50)	8 ③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세율 1000분의 8 적용)	8 ④
	자영업인 등에 대한 감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취득세(50)	9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세(100)·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9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100)	9 ③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어업권에 관한 면허·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100)	9 ③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농업협동조합 등이 용지할 때에 제공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등록면허세(75)	10 ①
			주민세 재산분(100) · 종업원분(100)	10 ②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설립등기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등록면허세(100)	11 ①
			취득세(50) · 재산세(50)	11 ②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취득세(50) · 재산세(50)	12 ①
			등록면허세(100)	12 ②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용지할 때 제공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입찰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합정행차원기금을 용지할 때 제공되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입찰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100)	13 ① 1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 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등록면허세(100)	13 ①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해당 농지르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3 ②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찰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3 ②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합정」 제6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	재산세(50)	13 ②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합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	취득세(100)	13 ②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0)	13 ② 4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100)	13 ② 5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 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취득세(100) · 재산세(100)	13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50)	13 ② 2
		농업협동조합 등이 자유무역합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	취득세(100)	13 ② 3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100)	13 ② 4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연세초·중·고등학교, 합동농회, 화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용·시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25) · 재산세(25)	14 ①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25)	14 ②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100) · 재산세(100)	14 ③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주민세 재산분(50) · 종업원분(50)	14 ④		
농업경제지주회사 의 구매판매사업 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재산세(25)	14조의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 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관리공사)	취득세(50) · 재산세(50)	15 ①
		주태·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15 ②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주태·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는 5년간 면제)	16	
사회복지 를 위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재검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보철용·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율	취득세(100) · 자동차세(100)	17 ①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지원		신청하는 1대에 한함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인이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 및 그 부속토지,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 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17조의2 ①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7조의2 ②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100)·재산세(50)	18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 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9 ①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9 ②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20 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 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50)	20 ①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 산(부대시설 포함)	재산세(100)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20 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20 ②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고위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1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21 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헌선복지 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22 ①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22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22 ③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100)	22 ④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균등분(100)	22 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 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취득세(100) 다만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 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2조의2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 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의 등기	등록면허세(100)	22조의3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22조의4 ①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50)	22조의4 ②	

### III.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금지출금 등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2조약 3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	취득세(100)	23
	연금지출금 등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3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24 ① 1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24 ① 2
		「공무원연금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24 ② 1
		「공무원연금법」 제6조제3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24 ② 2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4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24 ③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24 ③ 2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기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25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등록면허세(100)	25 ②
	근로복지공단 자원을 위한 감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취득세(100)	26
노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26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	27 ①	
근로복지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7 ①	
산업인력 등 자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와 건축물	취득세(50)	28 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28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	28 ②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8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포함 및 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취득세(100)	29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단체	취득세(100)·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29 ②	
	국가유공자 재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하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재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100)	29 ③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30 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30 ①	
	보훈병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2016.12.31.까지 : (100) 2017.1.1~2018.12.31 : (75)	30 ②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법인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100)	30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31 ① 1	
	장기임대 목적으로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	취득세(25)	31 ① 2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31 ③ 1
		임대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31 ③ 2
		임대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25)	31 ③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재산세(50)	31 ④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주택법」 제38조제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i) 「주택법」 제2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ii)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포함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iii)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	취득세(25)	31조의2 ①
		위 i) 및 ii)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취득세(25)	31조의2 ②
준공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준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31조의3 ① 1
		준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31조의3 ① 2
		준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50)	31조의3 ① 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0)	31조의4 ①
		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31조의4 ② 1
		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25)	31조의4 ② 2
사회복지 를 위한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용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32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	취득세(25)	32 ②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취득세(100)	33 ①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100)	33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 제외)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	34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100) 재산세(1천분의 1 세율)	34 ④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구가 사업주체로서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 재산세(1천분의 1 세율)	34 ⑦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등록면허세(100)	35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주택)	35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재산세(25) (단, 5억원 이하 주택)	35 ③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자금·상농지에 대한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100)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35조2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 포함)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담보대출금액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공제	35조3 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자원을 위한 감면		사단법인 한국시공조합(주)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세(100)	36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6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차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차과병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단, 2017.1.1~2018.12.31까지(75)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단, 2017.1.1~2018.12.31까지(75)	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단, 2017.1.1~2018.12.31까지(50)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단, 2017.1.1~2018.12.31까지(50)	38 ①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포함)의 부속병원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38 ②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단, 2017.1.1~2018.12.31까지(75)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단, 2017.1.1~2018.12.31까지(75)	38 ③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 400내 조례로 정하는 율)	38 ④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75)내 조례로 정하는 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 ④
국민건강보험사업 자원을 위한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관리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39 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39 ①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39 ②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25)	39 ② 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0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75)	40조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50)	40조약 ①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5)	40조약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50)	40조약 ②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학교 및 외국교육 기관에 대한 면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41 ①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1 ②
		학교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41 ③
		학교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100)	41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균등분(100)	41 ⑤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 (그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1 ⑥
	가속사 등에 대한 감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가속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학교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42 ①
		「교육기본법」 제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선박	취득세(100)·재산세(100)	42 ②
		신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2 ③
		해당 신학협력단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단, 2014.12.31.까지 면제	42 ④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43 ①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3 ②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단체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43 ③
		평생교육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100)	43 ④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4
	학술연구단체 및 정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45 ①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80)·재산세(8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80)	45 ②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비등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46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취득세(25), 재산세(25)	46 ②	

### III.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항제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75)	46 ③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 제7조 제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7조 제항 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취득세(25) 재산세(25)	47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축건축물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i)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ii)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취득세(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2 ①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2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건축법」 제2조제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	재산세(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2 ④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제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용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취득세(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3 ①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피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10)·재산세(10, 5년간)	47조의4 ① 1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피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항제8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50)·재산세(50, 5년간)	47조의4 ① 2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은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4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 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	취득세(75)·재산세(75)	49 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	취득세(75)·재산세(25)	49 ②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의 취득 등	취득세(75)·재산세(25)	49 ③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50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100)	50 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단체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50 ③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지원시설세(100)	50 ④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 ⑤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화성당 등	주민세 균등분(100)	50 ⑥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50)·종업원분(50)	51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한 감면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가 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100)	52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그 도서관의登記 또는 등록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100)	52 ②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은 제외), 과세가 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100)	53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광단지개발 사업행사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 가능	54 ①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50)	54 ②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등급 및 특등급인 경우)	재산세(25)	54 ②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중과 배제) 단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함.	54 ③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등록면허세(중과 배제) 단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함.	54 ③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가 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지원시설세 (50 이내)	54 ⑤
	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 ①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 ② 1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항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50)	55 ② 2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56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56 ②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가 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취득세(50)·재산세(50) 등록면허세(50)	56 ③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지방세법」 제5조제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임.	57조의2 ①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등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취득세(100)·등록면허세(75)	57조의2 ②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57조의2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100)	57조의2 ④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과점주주 간주취득세(100)	57조의2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을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자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등	등록면허세(100)	57조의2 ⑥
		법률 제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제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신용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등록면허세(90)	57조의2 ⑦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다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기에 관한 등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0조제2항에 따른 적기정착(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의 취득	취득세(100)	57조의8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항제호 및 제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57조의8 ②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57조의8 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8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 배제) 재산세(중과 배제)	58 ②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3년간)	58 ③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7.5)·재산세(37.5)	58 ④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37.5)	58조의2 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37.5)	58조의2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27조제항제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	취득세(75)	58조의8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50, 창업일로부터 5년간)	58조의8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등	등록면허세(100)	58조의8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	59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9 ②
		협동화살친체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50, 3년간)	59 ③
중소기업협동 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60 ① 본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등	취득세(75)	60 ①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취득세(세율 1000분의 20 적용)	60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재산세(50)	60 ③ 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중과 배제)	60 ③ 2
		특별시장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신기술무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취득세(50)·등록면허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0 ④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한국가스공사 또는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	취득세(50)·재산세(50) (단, 특·광역시 가스관은 제외)	61 ①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열수송관	취득세(50)·재산세(50) (단, 특·광역시 열수송관은 제외)	61 ②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광업권의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	등록면허세(100)	62 ①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	취득세(100)	62 ②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보안관리 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비덕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재산세(25)	62 ③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50)	62조의2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법인	취득세(50)·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①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해당 법인	취득세(75)·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②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분할등기	취득세(100)·등록면허세(100)	63 ③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득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④ 1	
도시철도공사의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④ 2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④ 3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지역지원시설세(100)	64 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10경감) 재산세(50)	64 ②
		항운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항운운송사업, 국제항운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	취득세(100)	66 ①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등록면허세(100)	66 ②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	66 ③	
	전기자동차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	66 ④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67 ①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위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67 ②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	자동차세(소형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67 ③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 (자동차세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	취득세(100)·자동차세(100)	68 ①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68 ②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100)	68 ②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5)	6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50)·등록면허세(75)	70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70 ③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35)	71 ①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35, 5년간)	71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가받은 공개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재산세(25)	71 ③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 특례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72 ①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별정우체국		재산세(100)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72 ②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직원의 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72 ③ 1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72 ③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100)	73 ①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73 ③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100)	74 ①
		주택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74 ③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5년간)	75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동경영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취득세(30)	76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76 ②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	취득세(30)	77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	재산세(100)	77 ②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취득세(35)·재산세(35)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①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취득세(35)·재산세(35)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②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	78 ③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 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35, 5년간)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③ 2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치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5년간) 그 다음 3년간 재산세(50)	79 ①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100)	79 ②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5년간) 그 다음 3년간 재산세(50)	80 ①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5년간) 그 다음 3년간 재산세(50)	81 ①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100)	81 ②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17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세(100)	81 ③ 2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17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세(75)	81 ③ 2 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17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세(62.5)	81 ③ 2 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직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지구 지정지역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주택장기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재산세(100, 5년간)	82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5년간)	83 ①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기간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거용 제외)	취득세(100)·재산세(50, 5년간)	83 ②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84 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해당 부분)	재산세(50)	84 ②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해당 부분)	재산세(50)	84 ③
공공행정 등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 ①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대한 지원		민영교도소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85 ②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새(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 공사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취득세(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등록면허세(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조의2 ①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등록면허세(100)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85조의2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3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85조의2 ④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50)	86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 ①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87 ①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 ②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87 ② 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은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8 ①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향군인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8 ②	
정당에 대한 면제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89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항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89 ②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정당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89 ③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해당 부분	지역자원시설세(100)	89 ④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100)	90 ①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 해당 마을회 등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90 ②
재외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그 부동산의 등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100)	9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92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	등록면허세(100)	92 ②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92 ③
자동차·기계장비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승달 또는 자동차·기계장비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	자동차·기계장비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전자승달과 자동차·기계장비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92조의 ①	

### 3. 지방소득세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종합소득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조정계산서 제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20% 공제	93 ①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5만원 초과: 2만 7,500원 + (5만원 초과금액의 30%)	94 ①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5 ①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96 ①
	종합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 ①

### III.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1명인 경우 : 연 1만5천원, 2명인 경우 : 연 3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2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3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한산한 금액 등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③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성실사업자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⑨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97조의4 ⑨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	98 ①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99 ①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00 ①
		벤처기업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00 ②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 ④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101 ①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02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신흥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흥투자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03 ①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04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 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04 ②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05 ①·②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06 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제2항을 적용 법률 제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조치 포함하는 외국인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106조의2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해당 공공차관합계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107 ①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08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08 ②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은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09 ①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공공관리 시스템설비 등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09 ②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등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0 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111 ①	

### III.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간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2 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간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3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공제할 때 공제할 해당 투자비용에 각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4 ①
	산업수요충당고등교육등 졸업률 영역 0.1%를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충당고등교육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5 ①
고용자율 위한 특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 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16 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사용시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만원을 공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7 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18 ①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119 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	이월과세 적용	120 ①
기업구조 조정을 위 한 특례	사업전환 무역조직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무역조정직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 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지의 양도금액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21 ①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직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직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2015년 12월 31일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밖에서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22 ①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	123 ①
지역간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24 ①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농업관련 영농발전을 위한 특례	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100조제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	125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6 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6 ②
			이월과세 적용	126 ⑤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7 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7 ②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8 ①
			이월과세 적용	128 ②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8 ③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29 ①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축사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30 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31 ①	
강화생자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131조의2 ①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32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33 ①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33 ① 2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33 ② 1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33 ② 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정의 지방 이전에 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134 ①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한 세액감면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35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35 ②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36 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취득·신축·증축, 개축 또는 구입 포함한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에서 공제	137 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137조의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38 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139 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40 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	140조의2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의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준용	141 ①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지방세법」 제92조제4항에 따른 세율(0.6%~3.8%) 적용	142 ①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43 ①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4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분양 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감면	145 ①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46 ①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47 ①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148 ①
	산업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내국인이 산림경관계획 또는 특수산업사업규약에 따라 새로 조성한 산림과 차종림,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성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149 ①
그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인 것과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150 ①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150 ②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가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용(맞춤형 교육비용)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제102조 준용	151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구에 대한 세액감면	대한민국 국민 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	152 ①·②

### III.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대한민국 국민 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52 ①·③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되며,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에 외국인투자비용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53 ①·②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54 ①
	제주 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155 ①·②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신설,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신설, 여수박람회장에 사업장 신설하는 사업	3년 이내(100%), 그 다음 2년(50%)	156 ①, 1, 3, 5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여수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지정 개발 사업시행자시행하는 사업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여수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지정 개발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3년 이내(50%), 그 다음 2년(25%)	156 ①, 2, 4,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	3년 이내(100%), 그 다음 2년(50%)	157 ①·②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금융중심지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	3년 이내(100%), 그 다음 2년(50%)	158 ①·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내(100%), 그 다음 2년(50%)	159 ①·②

구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율 등	해당 조항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 별 익금 및 손금에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 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60 ①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 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60 ① 2
	현금영수증기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기맹점별 5천원 미만의 가맹점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함을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161 ①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지금매수사업자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62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	163
	정치지급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지급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64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1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	165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외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16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함	167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포함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및 제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공제·감면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	167조의2

# Ⅲ. 증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

##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감면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및 감면을 등	해당 조항
지역 간의 균형발전 을 위한 조 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66 ③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67 ③
저축 지원 을 위한 조 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 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89 ①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 율과세 등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조합 등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에서 2007 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89조의 3 ①
		201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89조의 3 ②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적 구제제도

#### ☐ 과세전 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 있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합니다.

### 사후적 구제제도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 IV. 유용한 세금 정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사·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취하되지 않으면 불복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합니다(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117-4, 123-1).

### 마. 행정소송

- 과세관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이의신청 등과 다른 점입니다.**

### 바. 지방세와 국세의 불복제도 차이점

-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포함)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필요적 전치주의), 지방세의 경우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앞 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영업소)	□□□-□□□		
	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⑦ 전자우편주소	
⑧ 통 지 기 관				
⑨ 통지받은 연월일				
⑩ 통 지 내 용		세 목	그 밖의 내용	
		세 액		
⑪ 청구 세 액				
⑫ 청구 내용 및 이유				
<p>「지방세기본법」 제1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 장 귀하</p>				
구비서류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수수료
	2. 그 밖의 증명서류			없음
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첨부서류		접수자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 2. 그 밖의 증명서류		접수일자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뒤 쪽)

### 작성방법

#### □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청구내용란

- ⑧ 통지기관 : 과세예고 등을 통지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⑨ 통지받은 연월일 : 과세예고 등을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 통지내용 : 과세예고 등 대상 세목 및 지방세액을 적습니다.
- ⑪ 청구세액 : 과세전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⑫ 청구 내용 및 이유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감면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뒤 쪽)

### 작성방법

####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용란

- ⑧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⑨ 처분청 : 과세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 ⑩ 통 지 된 사항 또는 처분내용 : 과세된 세목 및 지방세액 등을 적습니다.
- ⑪ 불복사유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 ⑫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 ⑬ 증명물건의 표시 :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는 목록을 적습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뒤 쪽)

### 작성방법

####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 ① 성명(대표자)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 개인 :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청구내용란

- ⑧ 부과처분 : 해당 세목, 지방세액, 고지서수령일 등을 적습니다.
- 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기 바랍니다.
- ⑩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경과기간이 경과한 날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적습니다.
- ⑪ 불복사유 : 이의신청 결정 등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 ⑫ 전자송달 신청 : 전자송달을 원하시면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 ⑬ 증명물건의 표시 :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는 목록을 적습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신고 세액 증감제도

취득세 등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의 경우 당초 신고세액을 증감 변동시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제도가 있는데, 세액을 변동시키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제도로써 「기한 후 신고」 제도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신고 : 세액의 증액

##### 가.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 나.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③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다. 효과

-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1년 이내 수정신고	2년 이내 수정신고	비 고
가산세 감면율	50%	20%	10%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

## 경정청구 : 세액의 감액

### 가. 의의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 나. 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다. 효과

- 경정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경정청구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기한 후 신고

#### 가. 의의 및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합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효과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비로소 그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에 한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합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구분(효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력	○	×	×
가산세의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20, 50% 감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 지방세의 분납 및 물납

지방세는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만을 고수한다면 납세의무자가 고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납 및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분납

#### 가. 분납세목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sup>15)</sup>
- 먼저,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재산세의 경우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외에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중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지방세법기본통칙 118-1 1 ②)는 분납범위에 포함되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나. 분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sup>16)</sup>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 분할납부 세액이 됩니다.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

15) 지방세법 제20조의2 취득세의 분할납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16)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의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합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합니다.

### 다. 분납의 효과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백만원은 납기 내 납부, 5백만원 초과금액은 분납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기 내와 분납기한 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를 분납처리 함에 있어서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회수하며, 기 고지한 부과결정을 조정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뒤쪽)

### 작성방법

#### □ 신청인란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부과고지 내용란

- ⑧ 납부기한: 재산세 부과연도와 해당 월을 적습니다.
- ⑨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 ⑪ 납기내 세액: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을 적습니다.
- ⑫ 분할납부 세액: ⑨부과세액에서 ⑪납기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⑬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 ⑭ 분할납부 사유: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유를 적습니다.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의 물납

### 가. 물납세목

- 지방세를 물납할 수 있는 세목은 재산세가 유일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것 중에서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하나,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와 지방교육세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 나. 물납기준 및 방법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sup>17)</sup>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 물납절차

-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라.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이때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17) 재산세 물납대상이 되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동일 시·군·구 안에서 재산세의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초과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1천만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제외합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다른 시가표준액, 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따릅니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것도 시가로 봅니다.

⇒ 해당 부동산의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함)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 그 취득가격

○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합니다.

### 마. 물납의 효과

○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뒤쪽)

### 작성방법

#### □ 신청인란

-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 신청내용란

- ⑧ 부과세액: 부과 세액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 ⑨ 납부세액: 물납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⑪ 납부기한: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납부마감일을 적습니다.
- ⑫ 물납 신청세액: ⑧부과세액에서 ⑨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물납(물납부동산 변경) 명세란

- ⑬ 종 류: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⑭ 소재지: 물납으로 제공할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⑮ 평가기준일: 물납부동산의 가액을 최종 평가한 날을 적습니다.
- ⑯ 면적: 물납부동산의 면적(m<sup>2</sup>)을 적습니다.
- ⑰ 단가: 1m<sup>2</sup>당 가액 등을 적습니다.
- ⑱ 총액: ⑯면적 × ⑰단가

□ 문의사항은 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 체납시의 제재

지방세가 납부기한 이내에 완납되지 않고 체납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사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시의 각종 제재들〉

연번	제재의 내용	법적 근거
1	납부 독촉(최고)	지방세기본법 제61조
2	가산금 및 증가산금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
3	체납처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4	출국금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5	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
6	명단 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7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66조
8	[자동차세 체납에 한함]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등록증 회수, 자동차등록증 발급 거부	지방세법 제131조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개념

-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80조(징수유예 등)·제81조(부과철회) 및 제95조(체납처분유예)에 따른 유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제출사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sup>18)</sup>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이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

#### 다.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입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18)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②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생활과 밀접한 국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국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국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 가. 개념

- 양도소득세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등)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나. 법정 신고기한

소득의 종류	구분	법정 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자료 : 국세청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다. 서울(2014.1.1. 이후)

		구 분		세 율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자산	토지 또는 건물 (주택·조합입주권, 비사업용토지 제외)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40%		
			1년미만 보유		50%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입주권	1세대 3주택 미만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미만 보유		40%	
		1세대 3주택	지정 지역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4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 외	1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1년미만 보유		40%		
	비사업용 토지		지정 지역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이상~2년미만보유		Max(4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1년미만 보유		Max(5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지정 지역 외	2년이상 보유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b>*단, 14년 양도분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b>	
				1년이상~2년미만 보유		Max(4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b>*단, 14년 양도분은 40%</b>	
				1년미만 보유		Max(5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세율) <b>*단, 14년 양도분은 50%</b>	
미등기자산				70%			
주식	구분	상장·코스닥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 주주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의 거래	장내 거래	1년 미만보유	
	대기업	30%	20%	비과세	30%	20%	
중소기업	10%		10%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 주식	양도시기		지역구분		세율		
	2014.1.1~2014.12.31		일반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지정지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누진세율)+ 10%		
2015.1.1. 이후		모든지역					

자료 : 국세청

## 라. 비과세 양도소득

-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 ⇒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위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시행령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초일은 산입<sup>19)</sup>합니다.

## 마.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 제 율	
	일반 자산	1세대 1주택 해당 자산
3년 이상 4년 이하	10%	24%
4년 이상 5년 이하	12%	32%
5년 이상 6년 이하	15%	40%
6년 이상 7년 이하	18%	48%
7년 이상 8년 이하	21%	56%
8년 이상 9년 이하	24%	64%
9년 이상 10년 이하	27%	72%
10년 이상	30%	80%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19)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8548 판결 참조.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바.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합니다.

〈소득별 공제액〉

구분	소득별	공제액
1그룹	i) 토지 또는 건물, ii) 부동산에 관한 권리 iii)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 250만원
2그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 250만원

- 어느 한 과세기간에 1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예 : 토지)과 2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예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1그룹 자산에서 250만원, 2그룹 자산에서 250만원을 각각 따로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한 과세기간에 1그룹에 해당하는 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면 토지와 건물 각각 연 250만원씩 양도소득 기본공제(500만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룹 내의 자산이기 때문에 연 250만원을 한도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 가. 개념

-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그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0조〉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 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며, 1·2순위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나. 상속세의 과세형태

- 상속세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형태 비교〉

구 분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개 념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다음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식	상속인들이 취득한 유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에게 각각 과세하는 방식
예 시	<p>〈기본 가정〉                      피상속인 甲 유산 : 100억원                      상속인 A 70억원, B 30억원 각 상속                      상속세 : 30억원(100억원에 세율 적용)</p> <p>본래의 납세의무 : A 21억원, B 9억원                      A : 70억원 한도로 상속세 30억원의 연대납세의무 부담                      B :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30억원의 연대납세의무 부담</p>	<p>〈기본 가정〉                      피상속인 甲 유산 : 100억원                      상속인 A 70억원, B 30억원 각 상속</p> <p>A : 70억원에 세율 적용                      B : 30억원에 세율 적용</p>

## 다. 법정 신고기한

법정 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자료 : 국세청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라. 상속세의 납세지

원 칙	예 외
<p>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p>	<p>〈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p>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제1항

### 마.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바. 과세표준 계산시의 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각종 공제가 있습니다.

구 분	공제의 내용	법적 근거(상증세법)
기초공제	2억원	18 ①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19 ① · ④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1명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명당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예 : 15세인 경우 20세가 되려면 5년이 남았으므로 2,500만원(500만원 × 5년) 공제]	20

구 분	공제의 내용	법적 근거(상증세법)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명당 3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명당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일괄공제	i)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ii) 5억원 중 큰 금액	21
기업상속 또는 영농상속 공제	기업상속 공제 : 500억원 한도 영농상속 공제 : 5억원 한도	18 ②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2 ①
재해손실 공제	손실가액. 다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의하여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23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	23조의2 ①
감정평가수수료공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500만원 등	25 ①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 사. 세액공제

- 상속세는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 단기재상속세액공제가 인정되어 증여세액 등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공제는 적용됩니다.<sup>20)</sup>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속 기간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1 ② 참조.

## IV. 유용한 세금 정보

재상속 기간	공제율	재상속 기간	공제율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 아. 연부연납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부연납의 기간은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이 정해집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부시기	상속세 납부액	비고
<b>계</b>	<b>6,6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b>	
2014. 10. 31.	1,100만원	신고납부기한
2015. 10. 31.	1,1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5,500만원에 대한 것)	5회에 걸쳐서 납부한 이 부분을 ‘연부연납’이라고 말함.
2016. 10. 31.	1,1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4,400만원에 대한 것)	
2017. 10. 31.	1,1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3,300만원에 대한 것)	
2018. 10. 31.	1,1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2,200만원에 대한 것)	
2019. 10. 31.	1,100만원 + 연부연납 가산금(1,100만원에 대한 것)	

주 : 위 연부연납 표는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① 2014. 10. 31. : 5년 연부연납 허가 신청
- ② 상속세 납부세액 : 6,600만원(가업상속 이외)
- ③ 신고납부기한 : 2014. 10. 31.

## 증여세

### 가. 개념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민법 제554조), 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나. 증여세의 과세방법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또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sup>21)</sup>)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즉,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것을 누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 법정 신고기한

21) 예컨대, 父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을 증여받았고 母로부터 10년 이내에 5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IV. 유용한 세금 정보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 국세청

### 라. 증여세의 납세지

원칙	예외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등>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 마. 세율

과세표준	세율	비고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바.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산·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받고 신탁고기한까지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 한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

#### 사. 증여세 과세가액상 공제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 분	공 제 액
i)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ii) <del>직계존속</del>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iii)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iv) 위 ii) 및 iii)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자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IV. 유용한 세금 정보

### 아. 세액공제

- 증여세는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10%)가 인정되어 기납부세액 등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공제가 적용되는 점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 자. 연부연납

-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경우와 같으므로 상속세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록

# 부 록



## 2015 달라진 지방세

### 1. 지방세법

구 분	개정내용	해당조항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등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련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하는 등 담배소비세를 평균 57.1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함.	52 및 151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퍼센트씩 인상함.	146

### 2. 지방세특례제한법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농·어업을 위한 지원	<p>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p> <p>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p> <p>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p> <p>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p> <p>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p>	8, 13, 14 및 14조의2 신설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장애이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17, 19~22, 29, 30, 37, 38 및 41

# 부 록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p>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p> <p>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p> <p>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p>	
교육·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p>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p> <p>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p> <p>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p>	42, 46 및 54
기업구조 및 재무 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	<p>기업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p> <p>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p> <p>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p>	57조의2, 57조의3 및 58조의3 신설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p>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p>	58, 59 및 60 등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p>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p> <p>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p>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p> <p>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p>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	<p>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p> <p>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p> <p>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p> <p>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p> <p>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p>	63, 65~6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p>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p> <p>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p>	71 및 76~78

# 부 록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을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85조의2 및 87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89 및 90 등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감면 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167조의2 신설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177조의2 신설
지방세 특례의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181

구 분	개정 내용	해당조항
사전·사후 관리 강화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15 지방세 길라잡이

2015년 1월 일 인쇄

2015년 1월 일 발행

발행인 허 동 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편집인 조 조 익 대외협력실장

편집위원 차 규 현

발행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TEL 02-2071-2795

FAX 02-2071-2788

<http://www.kilf.re.kr>

---

※ 본 책은 안내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